

제1발표: 환경해설가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숲해설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김인호(신구대학)

1.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

최근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해설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은 대도시, 도시근교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환경단체(사회단체)가 스스로 나서는 곳도 있고, 행정기관⁴⁾이 주도하는 곳도 있다. 때로는 지방의제²¹⁾, 재단법인⁶⁾, 중앙정부⁷⁾ 등 지원사업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생태안내자’, ‘환경지도자’, ‘숲해설가’, ‘환경해설가’, ‘자연안내자’, ‘생태환경안내자’ 등 정말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지역장소별, 단체별로 실시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일련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에 배출된 지도자들이 일반 시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숲, 하천, 공원, 식물원, 사적지 등지에서 의미있는 환경해설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환경해설가(환경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환경해설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며, 인증된 교육과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질의 환경교육(환경해설)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과 환경교육에 대한 적절한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 4) 성남시의 경우에는 1999년부터 환경지도자를 격년제로 양성하고 있는데, 수료한 환경지도자들은 성남시 공원의 환경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 5) 광역지방의제21, 기초지방의제21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환경해설가 양성과정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경기의제21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실천사업으로 안내자 양성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생태안내자 육성사업으로 광명YMCA, 남양주YMCA, 성남환경운동연합,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등 14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9월 23일-25일에는 경기도의 17개 시군 31개 단체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태안내자 공동연수를 진행하였다.
 - 6)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지도자양성과정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2003년 발족한 한국색문화재단에서도 숲 해설가 양성과정 지원계획을 갖고 있다.
 - 7)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환경단체와 학교대상의 체험환경교육 지원사업, 여성부(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여성(주부) 대상의 생태안내자 채취업과정 프로그램, 노동부, 보건복지부(노인인력지원기관)에서 노인대상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숲해설가 양성과정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연해설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원레인저(Park Ranger, 자연환경안내원)를 공개채용하는 등 중앙정부와 중앙부처에서 환경해설가 양성과정을 지원하거나 직접 관장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숲해설가 분야가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운영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숲해설가 양성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일본, 미국의 경우에는 숲해설가와 관련된 자격제도와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체계적이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숲해설가 양성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숲해설가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개발 및 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숲해설가 관련 양성과정은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약 90여 개의 양성과정 교육이 실시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숲해설가 양성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하기 보다는 일련의 교육내용을 담당할 강사중심으로 교육과정이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한 교육내용과 강사진의 중복으로 교육과정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숲해설가가 국가공인자격증이든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자격증이라는 자격증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자격제도가 갖는 한계, 필기시험으로 감수성, 현장체험활동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인증을 위해서 어떤 절차와 무엇을 인증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숲해설가 관련 인증제도의 도입은 바람직 하며, 숲해설가의 질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사회적 수요와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처라고 판단된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 특성과 논의사항

인증(認證)이란 어떤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 기재가 정당한 절차로서 이루어졌음을 공식적인 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법률학 대사전, 1996). 즉 학교나 대학, 병원 등의 교육기관 및 사회사업기관 등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공식적인 수준의 활동이나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숲해설 관련 인증제 도입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질 높은 숲해설을 제공해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한국 사회의 건강한 환경인식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로든 현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숲해설가의 활동과 수준미달의 양성과정 난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는 선발·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대 수준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의 도입에서 중요한 관건은 **인증기준의 적합성, 타당성, 인증절차의 합리성, 인증기구의 적절성과 신뢰성, 사후관리의 공개성, 투명성** 등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가인데, 이러한 것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는 법적인 기반을 갖는 숲해설가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만 만들고,民間에서 관련 단체들의 합의를 통해 운영 관리하는 민간주도형 운영방식의 채택을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 특성

2005. 8. 4 법률 제7676호로 제정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⁸⁾에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는 향후 숲해설 관련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숲해설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모두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숲해설가,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하나 법률상의 내용에서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숲해설가 양성을 위한 양성과정과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로 판단된다.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기준은 기초교과목 6과목(숲생태학, 숲해설개론, 환경윤리, 숲과 역사·문화, 응급조치, 야생생물학) 148시간⁹⁾, 이론과 실습의 권고, 선택교과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상에 최소 3개의 인증된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내용의 하나인 교육시설은 강의실, 실습장, 화장실·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시설보유와 임대 등의 상황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최초의 숲해설 및 환경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로 숲해설가가 일반인들에게 해설활동 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이다. 프로그램과 활동의 인증구분이 모호하며, 활동 뉘음 정도가 프로그램으로 인증되는 내용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 8)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9) 초기 시행규칙의 내용이 최근에 수정보완이 되었는데, 초급, 중급, 고급과정의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의 구분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수정된 내용도 3단계별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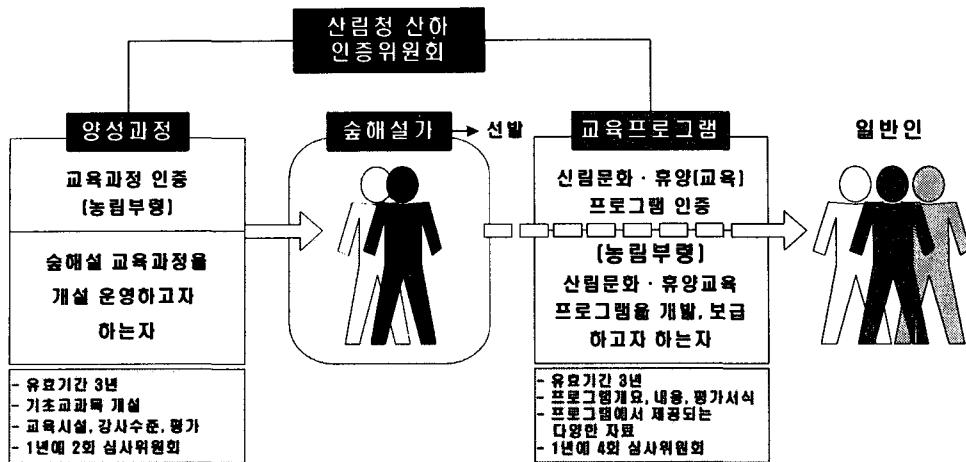


그림 10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 체계도

나.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에 대한 논의 사항

1) 기존 숲해설 양성과정 문제점 해결 지향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의 핵심은 기존에 숲해설 관련 양성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좀더 질높은 숲해설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존의 숲해설 양성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존의 숲해설가 양성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형식적인 특성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정리¹⁰⁾하면 다음과 같은데, 우선 형식적인 특성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강의시수가 짧다. 일반적인 개론수준의 내용조차도 다루지 못하게 된다.
- 둘째, ‘누구나’에게 허용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비슷한 수준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교육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전영우, 1998), 기본적으로 숲해설가에 대한 역할이나 활동을 이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 셋째, 현장학습과 실습의 비중이 적다. 현장성이 매우 강한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학습과 실습과정은 숲해설가 양성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현장학습¹¹⁾과 실습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현재의 양성교육 프로그램에서는

10) 하시연(2005), 환경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숲해설가 직무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학박사학위 청구논문(2차 심사용),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11) 현장학습이란 학습장소를 학습자료가 있는 현장으로 옮김으로써 학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수업방법인데 반해 실습은 특정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직접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는 활동을 말한다(서울대학교, 1998). 따라서 현장학습을 강의실이 아닌 숲이나 현장에 가서

현장학습과 실습이라는 개념이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양 성프로그램에서 실습과 시연은 전체 강좌의 8%미만으로 제공되고 있다.

- 넷째, 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교육내용의 시간 배분이나 과목의 배치에 있어서 선수적으로 먼저 다뤄야할 내용과 후속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이 일관적인 순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섯째, 양성교육 이후에 자격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부재하다. 교육이후에 교육생들이 해설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했다는 자체에만 의의를 두고 있다. 교육이후에 교육생의 능력이 얼마나 배양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평가를 도입해야만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 첫째, 특정한 능력만이 강조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내용 중 숲생태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 중에 70% 이상이 지식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자연과학적 내용이 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적 내용이 부족하다(박미선 외, 2003)
- 둘째, 양성교육내의 과목간 연계성이 부족하다. 주제에 따라 여러 명의 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양성교육은 강사에 따라 다른 견해나 주장으로 인해 교육생들이 혼란을 겪게 되거나 강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기존의 숲해설가 양성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시스템이 보완되는 것이 숲해설가 교육과정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증기준의 적합성과 타당성 확보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질관리의 근간적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제시된 교육시설은 대학, 학원, 교회, 성당, 규모가 있는 사회단체가 아니면 시설을 보유하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숲해설 관련 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했던 단체 중에 과연 이런 시설을 보유

직접 보고 만지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실습이란 배웠던 것을 직접 교육참여자들이 시연하면서 숲해설가로서의 능력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학습은 수동적으로 배움에 참여한다면 실습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키우게 된다.

한 지역의 풀뿌리 단체가 얼마나 될까 ?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숲해설가 직무(능력)분석의 선행이 되지 않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어 체계적인 숲해설가 직무분석을 토대로 교육과정이 입안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녹색교육센터 숲해설가 양성을 위해 시도된 DACUM 직무분석의 결과¹²⁾가 향후 세부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양성된 숲해설 관련 지도자들의 교육과정 인증제도에 대한 소급문제¹³⁾, 숲해설 가의 등급, 수준에 대한 고려 문제¹⁴⁾, 다양한 수준차이를 보이고 있는 인증기관의 기준 설정의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 또한, 숲해설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막을 가능성도 예상되는데, 프로그램 인증의 기준설정 문제, 어떤 기준을 통해 설정할 것인가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법률의 적용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좀더 보완적인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1)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에 대한 사항

숲해설관련 교육프로그램은 좀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교육프로그램이 진행하는 교육목표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숲해설가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을 획일적인 사고로 파악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창발성, 창의성, 다양성(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속성)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초기 단계에서 너무 규범적인 교육내용에 집착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이다. 심의중인 시행규칙¹⁵⁾에서는 6가지 교육내용(산림과 인간의 관계, 산림생태계, 산림문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 산림상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산림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산림간접 문제 및 해결방안)과 26가지의 세부교육내용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속하도록 정리되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이 가능한 여지를 열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숲해설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공통교육내용과 선택교육 내용으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 프로그램의 유형별로 목표로 하는 교육내용과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공통 교육내용과 선택**

12) 이재영 외(2005), 청소년 녹색교육센터 프로그램 개발, 한국녹색문화재단, 공주대학교.

13) 이미 배출되어 숲해설가로 활동하는 기수료생들에 대한 보수교육, 심화교육 등을 통한 소급 문제가 사회단체에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4) 일본의 경우 리더, 인스트럭터, 코디네이터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개정된 내용에도 3단계(초급, 중급, 고급)로 인증하고 있다.

15)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제는 인증기준이 제3조관련 별표1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교육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교육프로그램 유형을 큰 범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한 기준이 좀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일 또는 주간 정기형(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1회에 3시간 이상 당일 또는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 활동 숲해설 교육프로그램), 숙박형 프로그램(숙박시설을 갖춘 활동장에서 일정 기간 숙박을 하며 참가하는 숲해설 교육프로그램), 이동형 프로그램(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면서 참가하며 숙박을 하여야만 하는 일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 프로그램(예: 답사 프로그램), 특수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이러한 내용이외에도 다양한 유형(대상자의 연령, 규모, 장소 등등)으로 프로그램이 구분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좀더 숲해설 교육프로그램의 현황분석과 향후 숲해설 분야의 vision과 발전방향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수립에 기반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숲해설가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

최근 보완된 숲해설가 교육과정에는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해설가 양성 교육과정의 유형¹⁶⁾을 구분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3단계로 구분한 자격요건이나 직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격요건이나 직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교과목, 강의시수 등)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초급, 중급, 고급과정의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의 구분에 대한 준거가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초급과정에 너무 많은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이 치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숲해설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다면 중급과정에 좀더 교육과정이 심화되어 초급단계를 거쳐 일정기간 숲해설 경험을 통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정리된 시행규칙상의 숲해설가 교육과정은 초급의 경우 140시간 이상 8과목, 중급은 4과목에 60시간 이상, 고급은 선택 1과목을 포함하여 3과목 3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초급과정의 교육내용과 시간을 고려해서 보면, 오리엔테이션(과정소개, 참가자 인사

16) 초급은 수목이나 종 등에 대하여 해설 할 수 있는 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중급은 초급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초급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주제가 있는 숲해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교육과정, 고급은 중급과정을 이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정리하고 있다.

및 교류 시간 할당)과 과정 평가(프로그램 평가, 성취도 평가) 시간을 140시간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시간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초급과정의 140시간을 일주일에 2회 3시간씩 운영한다면, 23~24주가 필요하고, 6개월 가량의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과연 이러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일주일에 1회 3시간씩 운영한다면, 1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단계별로 연령제한은 없는 것인지, 단계구분에 대한 좀더 명료하고 구체적인 운영논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 강사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특히,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의 강사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차등화할 것인가? 실습장에 대한 규모와 상황은 어떤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강의실의 규모와 평가수단은 성취도 평가에 국한할 것인지, 프로그램평가(운영평가)는 상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급, 중급, 고급의 3단계 설정은 숲해설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과연 이들이 인증된 단계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공급과 수요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검토도 필요하다.

시행규칙에서 소급문제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거론되어 있지 않은데, 일부분이 기존 숲해설가에 대한 보충교육, 활동경력인증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급 교육과정 인증을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인증한 산림문화·휴양프로그램(3개 이상 포함)에 대한 내용은 교육과정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을 유연하지 못하게 하는 기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특히, 인증된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의 성실이행 여부(운영성실성, 내용성실성, 피교육생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세부 규칙이 마련되어 **사후관리에 대한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인증된 숲해설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명시되는 기본적인 기준을 달성하도록 단계별(초급, 중급, 고급) 숲해설가 DACUM 직무분석을 토대로 개발한 숲해설가 양성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숲해설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에 의거하여 개발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인증기구의 적절성과 사후관리의 투명성 확보 필요

제시된 법,령, 규칙의 내용은 산림청이 인증위원회를 통하여 숲해설가를 관리(심의,

선발, 활용 등)하겠다는 관주도형의 접근으로 판단되는데, 숲체험교육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미 일본의 산림인스트럭터제도의 경우 1991년 제도가 발족하고 2000년도까지 (사)전국산림레크레이션협회는 자격시험, 등록, 청호부여 등의 산림인스트럭터 자격심사·증명사업을 농림수산장관의 인정사업으로 실시했으나 1996년 9월 각의 결정으로 법령에 기초한 자격인증 외의 자격인증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행정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2001년 이후는 (사)전국산림레크레이션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으로 변하여 초기에 관주도로 운영되던 것을 민간이 주도하게 되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민간이 인증을 주도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주도형의 인증제 도입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면, 인증제도의 수정과 보완 및 시행절차의 개선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TF Team(민관 동수의 인원)을 구성하여 2006년 8월 시행되기 전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과 적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은 향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부분적 개정이다. 이것은 법률이 적용되기 전에 개정을 한다는 부담이 있어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편이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합리적이며 유연한 운영을 도모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다.
- 인증제의 적용과 관리를 누가 맡을 것인가? 인증을 받은 사람의 활동 경력 등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심화과정 참가 자격 등으로 인해 경력 증명 필요) 등의 내용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 산림청 등의 국가가 관리의 주관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 사회단체 협의체가 주관하거나 네트워크 차원에서 별도의 위원회에서 주관, 국가와 사회단체의 컨소시엄 조직이 주관, 숲해설가 인증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기구 주관(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경우 별도 기구인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위원회)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에 문제해결 열쇠가 달려있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을 갖고 운영되어야 하는가 ?

- 첫째, 책임과 권한의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숲해설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면서 질관리를 한다는 권한에 치중하기보다는 숲해설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support)이라는 책임도 함께 져야한다. 열악한 지역단체의 지속적인 경제적, 정책적 지원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둘째,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 운영의 개방성이다. 좀 더 많은 숲해설 관련 사회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참여의 정부에서 진정 얼마나 많은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숲해설 인증제도의 공공성을 보장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인증위원회의 인적구성¹⁷⁾으로는 사회환경교육의 상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집중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방성은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4)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변화

산림청이 주도하는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는 법적용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중이다. 아직 적용도 되지 않은 법에 대해 공개된 논의의 구조 필요성과 민간주도를 제시하는 것은 사회환경교육에 파급될 영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은 부분 걸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숲해설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도입은 숲해설 관련 사회단체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수도권 중심의 기존에 숲해설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던 단체가 우선적으로 인증받게 될 것이며,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숲해설가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어 유명세를 탄 숲해설가 양성 단체가 마치 대치동의 유명 입시학원처럼 탄생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확보된 유명(?) 강사진과 교육시설, 다른 지역에 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구성으로 다른 지역의 숲해설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교육생이 몰릴 것으로 판단된다.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가 기대하고 있는 질높은 숲해설가 양성과 프로그램의 제공은 초기 단계에 상업적인 논리에 밀려 지역간 양성과정의 수요가 몇 단체의 집중될 것이며, 이것은 기존에 공익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던 숲해설가 수요공급시스템이 일시에 상업성과 경쟁이라는 경영논리로 재편될 것으로 생각된다.

17) 인증위원회 인적구성원 : 7인 정도 예상(공무원 2인 포함, 전문가, 민간참여가 부족)

이러한 문제는 지역의 소규모 풀뿌리 사회단체가 숲해설 관련 지도자 양성과정을 통해 수급하고 있던 자원활동가와 사무국인력의 충원에 어려움이 야기할 것이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지역숲해설가(자원활동가)들이 지역단체와의 연대와 연계성에 느스한 관계가 정립될 것이고, 지역이나 지역사회단체와 관계없이 숲해설가를 요구하는 휴양림, 공원 등 새로운 수요처를 쫓아가는 프리랜서 숲해설가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지역중심의 환경교육과 환경운동의 통합적 발전모델은 쉽게 근간이 흔들릴 것이 예상된다.

초기에 숲해설 교육과정 **인증기관의 수(數)**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인증기관의 수를 결정할 예정인지(예를 들어, 전국적인 균형과 분포, 과거에 숲해설 양성과정 운영 경력, 숲해설 관련 사회적인 명망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증기관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숲해설가의 규모(인원)** 등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인증기관의 역량에 맡길 것인지 시행 전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증기관의 수와 양성규모(인원)에 대한 사항은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특히, 숲해설가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숲해설가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적 사고는 초급, 중급, 고급단계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초급단계에서 140시간의 교육시간(5~6개월 기간, 1년까지도 가능)과 수강료를 투자하고, 할일이 없다면 국가가 인증한 양성기관에서 국가가 인증한 프로그램을 많은 돈(?)을 주고 배웠는데 얼마나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가 인증한 양성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 사실 신뢰성의 문제는 다소 사소하다고 생각되며, 법자체가 추구하는 명목적 대의명분을 잃게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인증기관으로 초기에 결정된 양성기관에서 우수한(?) 강사진 수급과 양질의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화장실, 회의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을 확보하여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주말반 등 대대적인 양성프로그램을 기존보다는 **비싸게 독점하여 운영**하는 것에 어떠한 규제나 관련조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양성기관의 양심과 도덕에 운영을 맡기는 끝인데 과연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인증기관으로 결정된 양성기관에서 타 양성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은 인원수를 교육할 것인지도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숲해설가 교육과정이라면 초급, 중급, 고급을 동시에 운영하는 인증기관도 가능 한데, 인증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수준단계에 대한 제한도** 검토가능하며, 인증 기관의 **역할 분담측면에서 특화**에 대한 것도 운영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숲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운영하던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형, 상업 형 기관과 단체가 숲해설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기관의 다양화와 다극화는 숲해설가의 수요와 공급체계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인증을 통해 무리하게 숲해설가를 대거 양성하여 수요없는 과잉공급으로 숲해설가 간의 치열 한 경쟁상황이 예견된다. 과연 기존의 열악한 기반에 기초한 숲해설 관련 양성단체가 상업형 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다.

문제의 핵심은 아니지만,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사회환경교육은 인증제도의 유행을 촉발하여 인증의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습지, 갯벌, 하천 등 자연자원 특성별로 지도자(활동가)의 인증필요성이 제시될 것이며, 유사한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인증제도의 도입이 사회환경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5) 숲해설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의 책무

숲해설관련 인증제도의 도입이 기존에 잘하고 있던 숲해설분야의 **자율적 발전시스템**¹⁸⁾을 국가가 개입하여 오히려 저해, 방해, 붕괴시키는 양상(현재 예상되는 문제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안목으로 숲해설분야의 진지하고 통찰력있는 **진단과 평가**를 통하여 새롭게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혜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21C 숲해설분야 비전과 단기적, 중장기적 전략**이 수립되면서 숲해설 인증제도가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국가가 숲해설분야의 **책무(mission)**와 **꿈꾸기(vision)**를 공유하지 않은 채 법률상의 논리와 제도, 운영의 이치따지기와 짜깁기를 고민하는 것에 매진한다면 그동안 민간분야에서 이루어놓은 숲해설분야의 의미있는 업적을 폄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국가가 나서서 숲해설분야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18) 기존의 숲해설 관련 분야는 취미적 참여, 세미직업적 참여, 자아실현적 참여, 모성애적 참여라는 여러유형의 숲해설가들이 공공성의 논리와 상업성의 논리의 갈등구조가 상존하는 숲해설시장체계안에서 스스로 자정하고 상호 발전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다. 자원봉사, 자원활동이라는 사회적 명분과 도덕성에 의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발전과정에서 개입된 자본(돈)과 행정편의에 의한 논리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숲해설분야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자기 검증적, 자기 비판적 차원의 인증체계(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생각하며, 감독과 권한을 행사한다는 권위적 행정중심주의에서 지원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눈다는 균형적, 상호 호혜적 논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용하(2003), 숲해설가 자격제도 입법 추진 방안, 숲해설가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산림청 · (사)숲해설가 협회
- 김인호 외(2003), 환경해설가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개발연구, 신구대학
- 김인호(2005), 숲해설가 인증제도에 대한 논의, 바람직한 숲해설 인증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 김인호(2005), 환경해설가 공동인증제도,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창립대회 워크숍 자료집.
- 김인호(2005).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의 주요과제,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준비대회 자료집, 89-97.
- 박미선 외(2003), 우리나라와 독일 대학 산림과학과 환경교육 교육과정 비교 연구, 환경교육, 15(2) : 49~60.
- 송영은(2004), 각국의 환경교육 관련 자격제도 탐색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환경교육, 17(2), 79-93.
- 송영은(2006), 사회 환경교육 지도자의 자격 제도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이광호 외(200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연구, 문화관광부.
- 이선경 · 이재영 · 김인호. (2003).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평가 -한 · 중 · 일 환경교육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논문집, 24. 105-115.
- 이재영 외(2004),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기본계획, 경기도.
- 이재영 외(2005), 청소년 녹색교육센터 프로그램 개발, 한국녹색문화재단, 공주대학교.
- 전영우(1998), 자연(산림)안내자 양성과 활용을 위한 제언, '숲과 자연교육', 수문출판사, P.22 6~235.
- 최석진 · 신호상 · 이선경 · 이재영 · 조길영(2003),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및 환경교육사 제도 연구, (사)한국환경교육학회.
- 하시연(2006), 숲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Richard E. Osorio(2002), Establishing a National EE Certification Program, NAAEE.
- (社)全國林業改良普及協會(2000), 森林インストラクター入門, (社)全國林業改良普及協會.
- 岡島成行(2002), 自然學校をつくろう, 山と渓谷社.
- 食野 雅子 · ホーニソグ睦美(1992), イソタープリテーツヨソ入門, 小學館.
- 日本 環境保全協會(2002), 環境教育Counsellor 紹介, 東京
- 清里環境教育フォーラム實行委員會(2000), 日本型 環境教育の「提案」改訂版, 小學館.
- 環境學習のための人づくり・場づくり編集委員會(編) (1995), 環境學習のための人づくり・場づくり, ぎょうせい.